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김정호 · 이연희 · 안태준
박해철 · 전진숙 · 윤후덕
이수진 · 허종식 · 신영대
최혁진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보행로·횡단보도 입구·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등을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u>자전거</u> 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u>자전거</u> 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u>자전거</u>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u>자전거등</u> 의 무단방치 금지) ① ----- ----- <u>자전거등</u> ----- -----. ② ----- ----- ----- <u>자전거등</u> ----- ----- ----- ----- -----.
제25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u>자전거등</u> 을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